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면, 재외공관장은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됩니다.

나. 재외국민의 재판상 이혼절차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령,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판결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
- ②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 ③ 상호보증에 있을 것

● 국내법원의 이혼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외국판결은 국내에서 집행력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거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은 외국공관을 통하여 소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5장 외국인의 토지취득

1. 기본원칙

종전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대한민국내의 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1998년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당국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내 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가.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1) 대상토지

토지취득에 허가를 필요로 하는 지역외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신고기간

토지의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3) 구비서류

소정의 토지취득신고서에 구비서류인 대상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처리절차

토지취득신고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하면 신고기한을 지켰는지, 신고서 및 구비서류는 갖추어 졌는지 등을 심사하여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나.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1) 대상토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신고만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한 구역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③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2) 허가신청기한

당해 토지의 계약체결일 이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소정의 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인 대상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처리절차

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하면 대상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 목적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다. 상속 등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신고대상

(1) 취득원인

외국인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상속·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기간

대상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즉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일, 환매의 경우 환매계약일(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확정판결의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소정의 토지취득신고서에 토지등기부등본 및 다음의 취득원인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① 상속의 경우: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경매의 경우:경락결정서
- ③ 환매권 행사의 경우: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4) 처리절차

토지취득신고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하면 신고기한을 지켰는지, 신고서 및 구비서류는 갖추어 졌는지 등을 심사하여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3. 국적상실자의 계속보유 : 신고대상

가. 신고원인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기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 구비서류

소정의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대상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과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라. 처리절차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하면 신고기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4.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특례

재외동포법의 시행(1999년 12월 3일)으로 외국국적동포가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동법 제정 전에 외국국적동포도 일반 외국인과 같이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상태계보전지역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구역의 부동산 취득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으나, 동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

동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출

가. 일반원칙

종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하거나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반출은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요건 및 절차

● 요 건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하거나 송금된 자금으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담보권 실행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절 차

부동산매각대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세금납부영수증 등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반출

재외동포 즉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 매각자금을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국적동포)
-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재외 국민)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6장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절차

1. 외국국적 취득자

가. 처 분

(1) 외국에서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류

● 처분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입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나,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위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으로도 가능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을 할 수 있으며, 거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임인의 신청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임을 나타내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합니다.

나. 취 득

먼저,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합니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 등기신청시에 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지역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 상 속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또는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하고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다만,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처 분

(1) 외국에서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첨부서류

● 처분위임장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인감증명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는 주소지에 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 1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도 있으며,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우리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재국에 우리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인의 신청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습니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상속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없으나, 종전에 주민등록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 상속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부동산실명제

1. 부동산실명제 실시 배경

각종 탈법·위법 및 반사회적 행위의 도구로 악용되어온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 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4. 위반시의 제재

●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금액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및 등기관에 대한 제출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위반한 기간 및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당해 부동산 가액의 최저 10%에서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가액 산정기준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 부과일 현재의 가격에 의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하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가,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 벌 칙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및 등기관에 대한 제출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및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 및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종중 및 배우자간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및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시 효력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6. 장기 미등기에 대한 제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3년 이내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위반한 기간 및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당해 부동산 가액의 최저 10%에서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등기의 기산일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매매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즉, 잔금청산일이며,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할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기산합니다.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등기자와 이를 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명의신탁자는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① 기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 ②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과징금도 부과하게 되나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 유예기간의 연장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 처분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하여야 합니다.

8.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기존 양도담보인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재외동포법에 의한 특례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국적동포는 일정한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외국국적동포는 토지의 취득이나 계속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소유명의의 실명전환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일(1995년 7월 1일) 이전의 명의신탁토지에 한하여 재외동포법시행일(1999년 12월 3일)이후 1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처분할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합니다.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8장 투자와 금융거래

1. 사업투자

가. 개 요

- 외국인투자의 의미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뜻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Portfolio 투자와는 구분됩니다.

- 외국투자자의 범위

외국투자자는 원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과 법인 및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같은 경제협력기구를 뜻하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에 대하여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투자가능업종 및 투자비율

- 투자가능업종

외국인투자대상업종 1,058개 업종 중 TV방송업, 라디오방송업 등 2개 업종을 제외한 1,056개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며 (99.8%) 그 중 통신, 전력 등 27개 업종에 대하여 투자비율의 제한 등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투자비율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나,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0% 미만도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투자비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육우사육업 50% 미만, 정기항공운송업 50% 미만 등)

다. 투자방법

현금 또는 자본재(현물)로 투자할 수 있으며 1인당 5,000만원 이상이면 신고수리됩니다. 증액투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라. 투자절차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원칙적으로 신고제이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신고기관은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지점과 해외사무소이며, 단순신고제로 즉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원칙적으로 신고제이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제이며, 그 대상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입니다. 신고기관은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와 같으며, 허가기관은 산업자원부이고, 그 처리기간은 신고의 경우 즉시, 허가의 경우 15일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 조세감면 혜택

외국인투자사업이 고도기술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수반하는 경우와 외국인투자지역내 입주사업인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조세감면 내용은 법인세는 최초소득 발생연도부터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되며,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되며(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15년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확대한 경우 그 규정에 의함),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당해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도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는 전액 면제됩니다.

바. 사후관리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허가)를 한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 투자원금 및 배당금의 송금보장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은 투자당시의 신고 또는 허가한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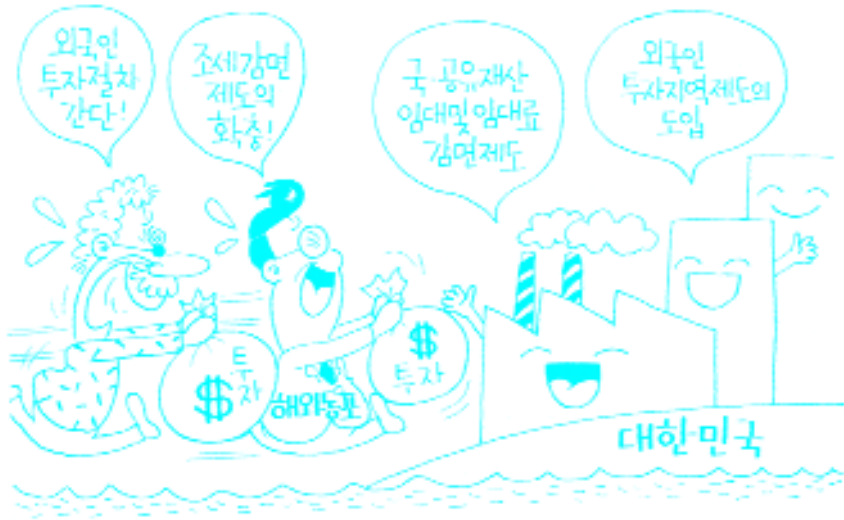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1998. 11. 17)이후 도입된 제도

●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

신고수리제(처리기간:즉시 또는 7일)로 운용하던 종전의 제도에서 단순신고제(즉시 처리)로 전환하였으며, 신고시 제출하던 각종 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외국인투자 신고서만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조세감면제도의 확충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03. 11. 현재 485개)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03. 11. 현재 149개)을 조세 감면대상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등의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법인세 등의 경우 종전의 8년(5년간 100%, 3년간 50%)에서 10년(7년간 100%, 3년간 50%)간 감면토록 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제도

임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 범위내로 확대하였으며,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도입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조업 영위 투자 금액 5천만불(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3천만불)이상,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 영위 투자금액 2천만불 이상,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위시설업 영위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업·공동집배송단지사업·항만시설운영업·항만배후단지사업 등 물류업 영위 3천만불 이상, 연구개발업으로 석사이상 연구인력 20인 이상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자금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2. 증권투자

가. 기본원칙

1980년대초부터 증권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에 따라 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금융·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공공적법인을 제외하고는 한도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증권시장의 안정과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종목별 취득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개방 주요내용

1998년 5월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한도가 완전히 철폐되었으나, 공공적법인인 한전·포철의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는 3%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며, 종목별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30%로 제한됩니다. 기타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서 주식취득을 따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금의 유출입에는 제한이 없으며, 투자자는 은행에 본인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과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외화의 반출과 반입

가. 원칙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인정된 투자 이외에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으며, 외국환거래법은 그 규제대상을 국적과는 별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 내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 ①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② 외국에 있는 사업체(현지법인,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및 사무소, 국제기구 포함)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한 자
- ③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 후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④ 위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그 체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은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의 반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3개월 초과 체재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인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재외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국민도 외국인과 동등한 조건하에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비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가 됩니다.

- ① 국내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 ②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자
- ③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목적으로 재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그러나,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인이나 사용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는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 ①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②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지점, 지사,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③ 대한민국 재외공관은 거주자이나, ① 외

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②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③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④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은 비거주자입니다.

다. 외화반입절차

비거주자가 합계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내국통화, 외국통화 등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수령인이 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입(송금)한 외화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및 여권을 제시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환전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 외화반출절차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반출이 가능하며,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반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명의로 국내부동산 매각자금을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국적동포)
-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재외국민)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신탁거래

비거주자는 외국환은행과 원화 또는 외화로 예금거래 또는 신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외화예금은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된 자금은 외화 또는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원화예금은 예치 및 처분의 성격에 따라

- ① 국내에서 취득한 모든 원화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자금은 원화로만 인출할 수 있는 예금과
- ②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거나 거주자와의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으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자금은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내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예금의 2가지로 구분됩니다.

신탁은 외국환은행과 외화신탁, 원화신탁 모두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4. 금융거래

가. 재외동포법상의 특례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신탁예금 등에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의 단기투기자금(hot money)을 규제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실명거래

(1) 실명거래의 의무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신규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 거래에는 확인절차가 생략됩니다. 재외국민 등 해외체류자가 해외의 국내점포를 이용할 때에도 실명확인을 하고 있고,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영사가 본인의 실명을 확인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재외국민등록부상 명의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재외국민등록부로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증인이 확인한 위임장과 본인의실명확인증표사본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실명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국내금융기관의 임직원도 포함됩니다.(다만, 실명확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



(2) 기존의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1993년 8월 12일 이전 금융자산의 경우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 금지되며 1993년 10월 12일까지의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비실명계좌를 인출할 때에는 1993년 8월 12일 현재 금융자산평가액 징수율 50%를 적용한 과징금을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주민세포함 99%)세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명계좌의 경우에는 위의 실명전환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실명확인을 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아무런 제재도 따르지 않습니다.

(3)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보의 비밀보장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장 병역제도

1. 병역제도 개요

● 복무기간

육 군	해 군	해 병	공 군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 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	예술체육 요원
24개월	26개월	24개월	28개월	26개월	30개월	34개월

● 병역의 종류

종 류	대 상
제1국민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보충역	징병검사시 현역복무는 곤란하나 공익군무는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총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총사를 마친 사람,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제2국민역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기근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제1국민역 편입자 관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제1국민역에 편